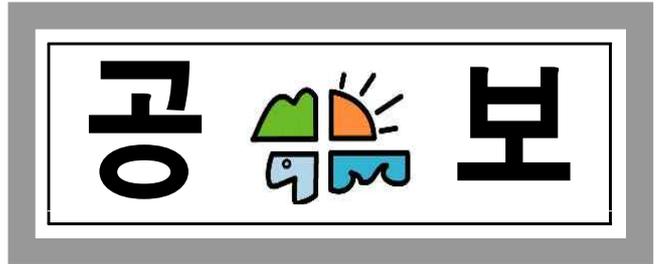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167호 2018년 10월 5일(금)

조 례

-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 고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5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37호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중심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각계각층의 속초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원탁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추대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민단체, 경제계, 문화·관광계, 사회복지계 등 시정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을 각각 대표하거나 그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원탁회의는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갈등요인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원탁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원탁회의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5일 전까지 재위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탁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원탁회의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 또는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① 원탁회의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때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국의 간사는 원탁회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 조치) ① 토론주제 담당부서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주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원탁회의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원탁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탁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속초 발전의 성장동력과 소통시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에 따라 자동이체 감면 규정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등 상위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안 제3조)
 - 나.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와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자를 포함하여 감면규정 확대 (안 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
- 연락처 : 033-639-2156 (FAX 033-631-077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담당(033-639-2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제3조(시각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①-----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	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	-----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	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		
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	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	-----		
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	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		
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	-----		
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	-----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자동차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차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 2019년 12월 31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자동차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

2. 자동차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 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제92조의2(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1~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

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1.12.31., 2015.12.31., 2016.12.30.>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8.2.2.>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7.7.>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7.7.>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7.>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제1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2.2.>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개정 2018.2.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2.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80-317번지
3. 공고기간 : 2018. 10. 5. ~ 2018. 10. 19.(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허가(신고)번호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조양동	1480-317번지	대	364	21	양정영	2018-신축허가-109호	건축주 : 양정영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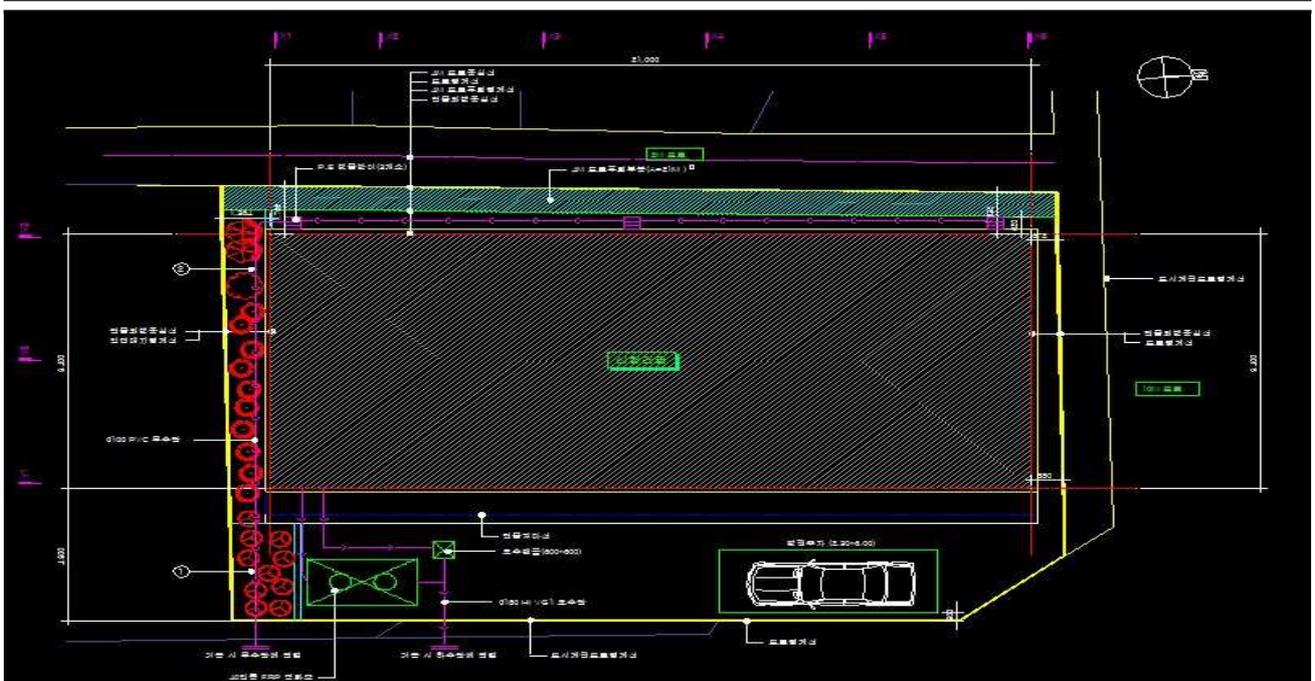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